

2017년도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17. 9. 23.(토) 세종특별자치시 시행,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및 제2회 경력 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14일

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일시 : 2017. 9. 23.(토) 10:00 ~

시 험 명	계급	시험과목수	시험시간(분)	비 고
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	7급	7 과목	10:00 ~ 12:20 (140분)	09:20까지 입실완료
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	9급	3 과목	10:00 ~ 11:00 (60분)	

2. 시험장소 : 조치원중학교

시험명	계급 / 직렬(직류)	응 시 번 호 (시작번호 ~ 끝번호)	수용 인원	시험장(학교)
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7급 행정직(일반)	71100001 ~ 71100278	278	조치원중학교 (조치원읍 조치원중고길 10-1) ☎ 044-863-0772
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	9급 공업직(일반기계)	31200001 ~ 31200003	3	

3. 응시자 주의사항 [시험당일 09:20부터 수험생 방송교육]

□ 일반사항

가.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(07:30 이후 시험실 개방)

나.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**응시표**(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<http://local.gosi.go.kr/> 세종 → 응시표 출력)와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)**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
※ 공무원증, 장애인복지카드,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(주민등록초본,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)를 지참하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배탈,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하며**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단, 금회 실시되는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(7급 행정)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시험시간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됩니다. 아래의 “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안내”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허용되며 정당한 안내 및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안내(7급 시험) >

-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인확인 및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**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**이 가능합니다.
-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,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, 화장실 사용 전·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**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소지,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** 됩니다.
※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·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-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**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.

마.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꼭 점검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하여 주시고, 시험당일에는 **시험장의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**되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사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소리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는 **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아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
자.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, 통신장비(휴대폰, PMP, MP3 등)와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으로 내 놓아야 하며, 시험시간 중 **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.**

차. 문제는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.

카.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타. 본 공고문, 응시표,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,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.

□ 답안지 기재 및 표기

가.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**답안지는 반드시 “검정색 사인펜”** 으로만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**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** 지참하여야 합니다.

나. 시험문제책의 과목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하며, **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대로 채점되므로 선택과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**

다. **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(자격증 소지자, 취업지원대상자 등)은** 필기시험일 전일(2017.9.22.)까지 자격이 유효하게 등록(취득)된 경우에 한하며, **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(2017. 9. 22. 24:00)까지**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 접속하여 **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**하여야 합니다.**(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.)**

라. **시험시작 후**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**책형란 해당 책형 (1개)**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
마. 답안은 매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**표기** 하여야 하며,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**정정할 수 없습니다.** (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, 수정테이프,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)

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바.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**응시자의 귀책사유**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**“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”**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,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. 또한, 답안은 <보기>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정답표기 불인정, 가산점 미반영 등)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⊙ ⊗ ⊖ ⊕ ⊙ ⊙

- 특히, **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, 미세한 이중표기,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OMR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부정행위 등 금지

가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~6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·가점·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
4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열람 안내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17. 10. 24.(화)

▶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(www.sejong.go.kr) - 『시민』 → 『시험정보』 란에 게시

나.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,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 각각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열람 가능

다. 문의처 :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 교육고시담당(☎ 044-300-3074)

